

의안번호	2201713
의 퇴 인	문금주의원
회 답 일	2024. 8. 1.
추계번호	24B1956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u>농어업재해대책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 1. 정부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u>농어촌상생협력기금</u> 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6.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u>해양환경개선부담금</u> 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의무규정
3	안 제5조제1항(장기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u>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음</u> (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6조제1항(일시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u>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음</u> (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7조제1·2항(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u>운용·관리함</u>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u>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u> (제2항)	의무·재량 규정

1) 이 법률안은 문금주위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71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7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71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1호에 따른 재해 및 환경오염에 의한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3. 재해 관련 분야 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의무규정
7	안 제11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국채·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재량규정
8	안 제12조제2항(이익 및 결손의 처리)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기금의 설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기금의 재원)	
3	안 제5조제1항(장기차입)	
4	안 제6조제1항(일시차입)	
5	안 제7조제1·2항 (기금의 운용·관리)	
6	안 제8조(기금의 용도)	
7	안 제11조(여유자금의 운용)	
8	안 제12조제2항(이익 및 결손의 처리)	

2. 상세 사유

가. 농어업재해대책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일정 예산을 편성·집행중

※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대책 사업 개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래 시점의 농어업재해 발생 여부 및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예측이 곤란하여 해마다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중임²⁾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업재해대책 복구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해오고 있음

[표 1] 농어업재해대책비 예결산 현황: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사업명	재해대책비 (1033-302)	재해대책비(융자) ¹⁾ (1033-304)	양식등 재해대책비 (3443-302)
2019	예산	557,64	28,500	10,000
	결산	68,860	6,187	10,842
2020	예산	60,188	8,500	7,500
	결산	133,634	851	8,286
2021	예산	100,000	28,500	8,000
	결산	145,604	1,252	6,150
2022	예산	150,000	8,500	8,000
	결산	65,039	5,893	7,973
2023	예산	200,000	—	8,000
	결산	170,023		16,909
2024	예산	280,000	—	50,000

주: 1) 2023년부터 재해대책비(융자)에서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사업으로 전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각 연도)

2) 예산이 부족한 경우 예비비 활용 또는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

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11·12조)

- 제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타기금·부담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용 위탁·관리비용, 장기·일시차입금에 따른 이자 부담, 농어업재해복구비용 및 생계안정지원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재원 조성) 정부출연금, 장기차입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등
 - ※ [참고자료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현황, [참고자료 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 [참고자료 4]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현황 참고
 - (기금의 용도)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지원, 특별재난지역의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등
 - ※ [참고자료 5]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참고
- 그러나 제정안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출연금 규모, 장기차입금, 타기금·부담금으로부터 전입금 규모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향후 농어업재해 발생 여부 및 복구비용, 특별재난지역 지역 및 해당 지역 농수축산업종사자 수, 생계안정 지원비용 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³⁾

3)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업재해와 어업재해 피해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발생 여부 및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관련 비용추계는 곤란한 실정이라는 공통된 의견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대책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농업재해대책

□ 목적

-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

□ 지원 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지원 내용

- **(직접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를 지원
 -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복구비 등

< 주요 항목 복구비 부담률 >

(단위: %)

항목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농약대	70	30	—	—
대파대	35	15	30	20
가축입식	35	15	30	20
농림시설	24.5	10.5	55	10

- **(간접 지원)**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피해율 50% 이상)에 대하여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지원
- **(공공시설 복구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 국가관리(국비100%), 지방관리(국50, 지방50), 농어촌공사 관리(국70, 지방30)
-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및 신규자금 지원
 - － 농가피해율에 따라 기 대출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 * 피해율 30~49% 농가는 1년, 50% 이상 농가는 2년 지원
 - － 원활한 영농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 용자 추가 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 * 고정금리 1.8%(또는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

2. 어업재해대책

□ 목적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태풍, 이상기후 등) 발생으로 양식생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복구지원을 통해 신속한 어가경영회복

□ 지원 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지원항목

구분	지원항목	지원비율 (%)	지원조건 및 지원액
직접 지원	어선·어망·어구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	보조 35, 융자 55 융자 70 (40톤이상 어선)	지원액 = 기준단가 × 톤수 지원액 = 건조지원 기준 지수
	증·양식시설복구비	보조 35, 융자 55	지원액 = 기준단가 x 피해시설량
	수산생물 등의 입식	보조 50, 융자 30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수량
	생계지원비	보조 100	1인가구 623,300원~6인가구 2,168,300원, 7인이상 1명 증가시 263,800원 추가 피해단위 피해율 50%
간접 지원	영여자금 상환연기	1년	어가단위 피해율 30~50%
		2년	어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재해대책 특별융자	융자 100	해수부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 (지원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참고

[참고자료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설립목적

-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어촌·농어업인의 상생협력을 도모

□ 근거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⁵⁾

□ 연혁

- '04.12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및 출범
- '17.01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칭 변경
- '17.11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법제화('18.5.29 시행)
- '22.03月: 김영환 사무총장(제6대) 취임

□ 역할 및 기능

-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조직 및 인원

- (조 직) 1처 4본부 2실 17부 3팀 / (인 원) 196명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조직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https://www.win-win.or.kr/kr/pages/about/organ.do>> (접속: 2024.7.30.)

□ 예결산 현황

<최근 4년간 재단 예산 및 결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소관 부처 등	주요 사업	2021		2022		2023		20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생태계사업, 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 등	44,257	38,043	41,097	39,100	42,040	36,398	38,67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운동	152	152	146	146	138	138	-
	농림축산식품부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홍보	515	513	500	498	222	221	242
	해양수산부	-	-	-	-	-	-	-	-
	소계		44,924	38,708	41,743	39,744	42,400	36,757	38,921
정부 외	위탁사업	대·중소기업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	27,458	23,485	31,156	25,445	27,305	23,116	26,700
	민간 출연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413,276	289,242	474,963	366,398	419,460	466,366	360,112
	자체수입		5,749	4,645	9,472	1,818	19,381	3,609	11,158
	소계		446,483	317,372	515,591	393,661	466,146	493,091	397,970
합계			491,407	356,080	557,334	433,405	508,546	529,848	436,89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자료

[참고자료 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현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內)

- (설립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 설치
- (법적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⁶⁾
- (연혁)
 - '15.11.30. 한·FTA 비준 동의 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여야정 합의
 - '16.06.24. 'FTA농어업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 (FTA농어업법) 기금 관리·운용주체(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용도 규정, (상생협력법) 재단명에 '농어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의 10% 법인세액 공제
 - '17.01.17. 국회 본의회 통과에 따른 3개 법률 시행
 - '17.03.30.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및 제1기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 출범
 - '19.11.28. 기업요청에 따른 농어촌상생기금 현물(물품) 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FTA농어업법' 개정 및 시행
 - '21.05.14. 제2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위원장 곽수근 서울대 교수) 출범
 - '23.05.28. 제3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위원장 곽수근 서울대 교수) 출범
- (역할 및 기능) 농어촌상생기금 관리·운용
- (주요사업) ①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②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③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사업, ④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 이익을 증진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하기 위한 공동협력사업, ⑤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등

○ (조직 및 인원)

- 운영본부(17명): 본부장 1명, 부장 2명(운영부/관리부) 부서원 14명(운영부 7, 관리부 7)
- 운영위원회(17명): 위원장 1명, 운영위원 16명(농어업계 4, 기업계 4, 공익대표 4, 정부 4), 간사 1명(운영본부장)

□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기금 설립 이후 최근까지)

- 기금 조성 총계: 2,401억원('24.06.30. 누적)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년	14	30,625	2	301	68	39	30,965
2018년	30	17,930	9	5,215	27	14	23,159
2019년	43	17,543	26	5,045	9	5	22,593
2020년	65	20,435	76	17,053	16	107	37,595
2021년	94	25,739	70	19,684	5	103	45,526
2022년	102	16,398	111	18,792	7	226	35,416
2023년	117	13,387	103	16,941	5	166	30,494
2024년6월	24	4,345	32	5,961	4	3	10,309
다년협약잔여분	2	270	3	3,780	-	-	4,050
총 계	132	146,672 (61.4%)	199	92,772 (38.3%)	130	663 (0.3%)	240,107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농어업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하고 있음

<최근 4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 관련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업 내용	2021		2022		2023		2024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농식품부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홍보	515	513	500	498	222	221	242
해수부	-	-	-	-	-	-	-	-

*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홍보는 FTA기금사업인 농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세부사업)'으로 추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자료

[참고자료 4]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현황

- **(부과 목적)** 해양환경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해양환경 복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
- **(법적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⁷⁾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 **(부과·징수 주체)**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
- **(부과기준)** 폐기물 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 L 이상의 오염물질(기름) 배출 시 부과
- **(부과 대상)** 폐기물해양배출업자 및 오염물질(기름)을 해양배출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 **(귀속주체)** 국가(수산발전기금)

□ 부과·징수 실적: 2020~2024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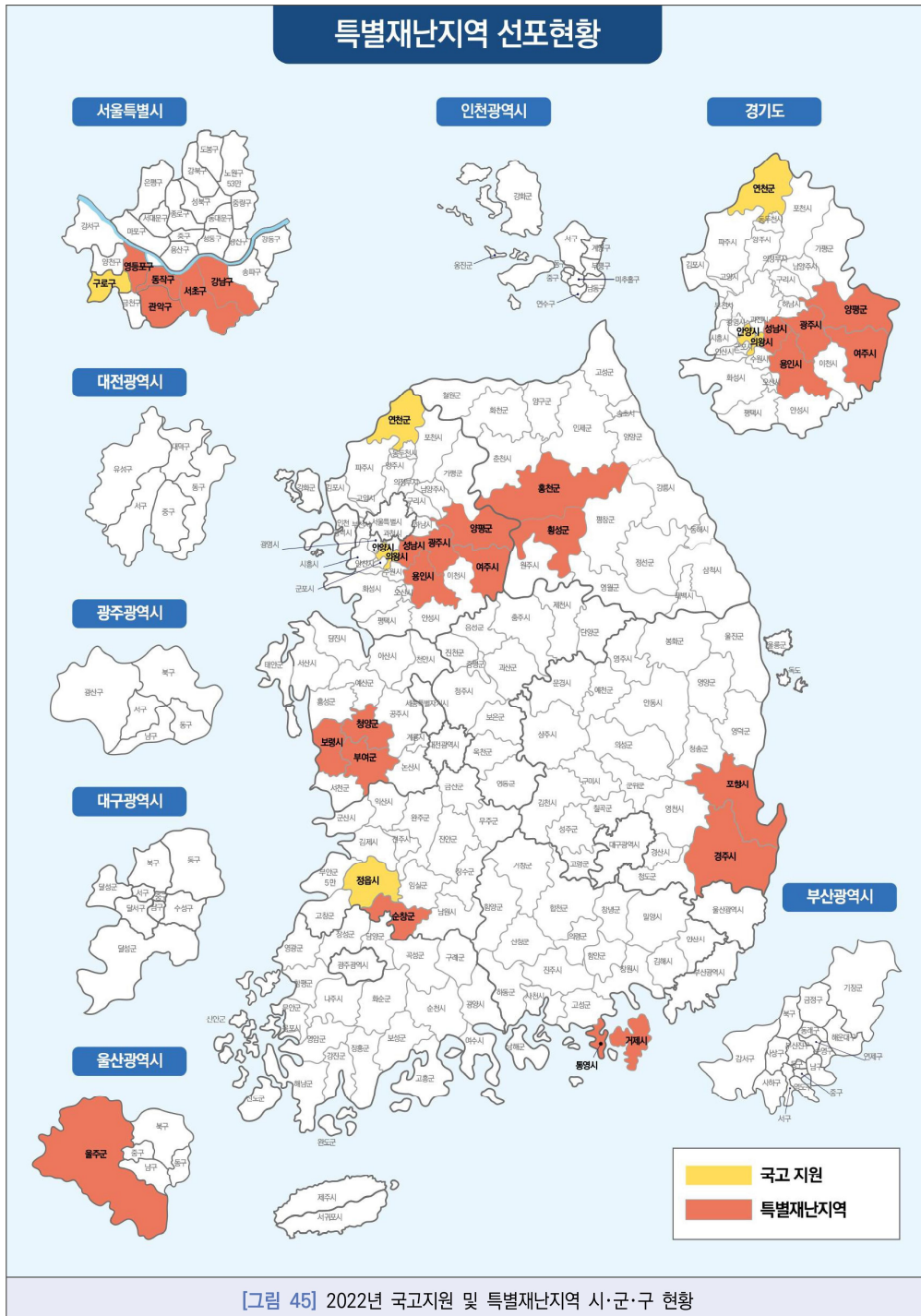
연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C)	계획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2020	234	39	224	39	224	95.7%	100.0%
2021	234	26	363	26	363	155.1%	100.0%
2022	234	40	558	40	558	238.5%	100.0%
2023	234	28	353	28	353	150.9%	100.0%
2024 (계획)	234	9	96	9	96	41.0%	10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7)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참고자료 5]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⁸⁾

(행정안전부)



8) 행정안전부, 「2022 재해연보 (자연재해)」, 2024.1.4., 92~95쪽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106249 접속: 2024.7.21.

1.2.4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선포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1항의2에 따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022년 지자체별 기준(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시군구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특별재난지역 기준		비 고
		시·군·구	읍·면·동	
0.1 미만	18억 원 이상	45억 원 이상	4.5억 원 이상	-
0.1 이상 ~ 0.2 미만	24억 원 이상	60억 원 이상	6억 원 이상	인천 동구 등 65개 시·군·구
0.2 이상 ~ 0.4 미만	30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부산 중구 등 66개 시·군·구
0.4 이상 ~ 0.6 미만	36억 원 이상	90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	충북 청주시 등 48개 시·군·구
0.6 이상	42억 원 이상	105억 원 이상	10.5억 원 이상	경기 수원시 등 49개 시·군·구

■ 자연재난 : 총 40건 선포

- (2022년) 3건 선포

번호	연 도	기 간	재 난 명	선포일자	선포지역
1	2022	8. 8.~17.	8. 8.~17. 집중호우	8. 22.	서울 영등포·관악·강남(개포1동), 경기 성남·광주·양평·여주(금사면·신북면),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9. 1.	서울 동작·서초, 경기 여주(시 전체)· 의왕(고천동·청계동)·용인(동천동), 강원 홍천, 충남 보령(청라면)
2	2022	9. 3.~7.	제11호 태풍 힌남노	9. 7.	경북 포항·경주
				9. 28.	울산 울주(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육지면·한산면)· 거제(일운면·남부면)
3	2022	12. 17.~24.	12. 17.~24. 대설·한파·강풍	1. 9.	전북 순창(쌍치면)

- (2002~2021년) 37건 선포

번호	연 도	기 간	재 난 명	선포일자	선포지역
1	2002	8. 30.~9. 1.	제15호 태풍 루사	9. 16.	16개 시·도 203개 시·군(전국 일원)
2	2003	9. 12.~13.	제14호 태풍 매미	9. 22.	14개 시·도 156개 시·군·구(전국 일원)
3	2004	3. 4.~5.	대설	3. 10.	10개 시·도 82개 시·군·구(전국 일원)

번호	연 도	기 간	재 난 명	선포일자	선포지역
4	2005	12. 3.~24.	대설	12. 29.	9개 시·도 57개 시·군·구(전국 일원)
5	2006	7. 9.~29.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7. 18.	울산 울주, 강원 홍천·횡성·평창·정선·양구·인제·양양, 전남 완도, 경북 경주, 경남 진주·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8. 10.	경기 안성, 강원 춘천·강릉·영월·화천·철원, 충북 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 전남 여수·고흥, 경북 성주, 경남 사천·김해·밀양·양산·함안·창녕·거창
6	2006	10. 22.~24.	10. 22.~24. 호우·강풍·풍랑	11. 15.	강원 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7	2007	8. 4.~15.	8. 4.~15. 호우	9. 11.	강원 양구
8	2007	9. 14.~16.	제11호 태풍 나리	9. 20.	제주
				10. 8.	전남 고흥·보성·화순·완도
9	2008	7. 23.~26.	7. 23.~26. 호우	8. 1.	경북 봉화
10	2009	7. 11.~16.	7. 11.~16. 호우	7. 31.	경기 양평,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북 완주, 전남 광양, 경남 김해·하동
11	2009	12. 4.~6.	12. 4.~6. 강풍·풍랑	12. 24.	충남 서천
12	2010	7. 16.~18., 7. 23.~24.	7월 호우	8. 9.	경남 합천, 충남 보령·부여
13	2010	8. 13.~18.	8. 13.~18. 호우	9. 3.	전북 남원·익산·완주·임실·장수·진안, 전남 곡성
14	2010	9. 1.~2.	제7호 태풍 곤파스	9. 16.	경기 화성, 충남 서산·홍성·예산·태안·당진, 전남 신안
15	2010	12. 29.~ 11. 1. 4.	12. 29.~1. 4. 대설	1. 24.	전남 영암
16	2011	2. 11.~14.	2. 11.~14. 대설	3. 3.	강원 강릉·삼척, 경북 울진
17	2011	7. 7.~16.	7. 7.~16. 호우	8. 2.	전북 완주, 경북 청도, 경남 밀양·하동·산청
18	2011	7. 26.~29.	7. 26.~29. 호우	8. 8.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
				8. 19.	서울 서초, 경기 양평, 강원 화천
19	2011	8. 6.~10.	제9호 태풍 무미파 및 호우	8. 19.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
				9. 2.	전북 남원·부안, 전남 완도
20	2012	8. 26.~30.	제14호 태풍 덴빈·제15호 태풍 볼라벤	9. 3.	전남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
				9. 4.	전남 고흥·영암·완도·진도
				9. 5.	광주 남구, 전북 정읍·남원·완주·고창·부안, 전남 순천·나주·곡성·보성·무안·장성, 제주
				9. 13.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목포·여수·구례·화순·함평
21	2012	9. 15.~17.	제16호 태풍 산바	9. 26.	경북 포항·경주·김천·고령·성주, 경남 통영·밀양·거제·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 전남 여수·고흥

번호	연 도	기 간	재 난 명	선포일자	선포지역
22	2013	7. 11.~15., 18.	7. 11.~15., 7. 18. 호우	7. 27.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평창·인제
23	2013	7. 22.~23.	7. 22.~23. 호우	8. 9.	경기 이천·여주
24	2014	8. 25.	8. 25. 호우	9. 5.	부산 북·금정·기장, 경남 창원·고성
25	2016	9. 12.	9. 12. 지진	9. 22.	경북 경주
26	2016	10. 3.~6.	제18호 태풍 차바, 풍랑, 강풍	10. 10.	울산 북·울주
				10. 17.	부산 사하, 경북 경주, 경남 거제·통영·양산, 제주
27	2017	7. 14.~16.	7월 호우	7. 27.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28	2017	11. 15.	11. 15. 지진	11. 20.	경북 포항
29	2018	6. 26.~7. 4.	6. 26.~7. 4. 호우, 제7호 태풍 프라피룬(쁘라삐룬)	7. 18.	전남 보성(보성·회천)
30	2018	8. 22.~25., 8. 26.~9. 1.	제19호 태풍 솔릭, 8. 26.~9. 1. 호우	9. 17.	전남 완도(보길)
					경기 연천(신서·중·왕징·장남), 경남 함양(함양·병곡)
31	2018	10. 4.~7.	제25호 태풍 콩레이	10. 24.	전남 고흥(동일)·완도(청산·소안), 경북 영덕·경주(외동·양북), 경남 거제(일운·남부)
32	2019	9. 6.~7.	제13호 태풍 링링	9. 20.	인천 강화, 전남 신안(흑산)
33	2019	10. 1.~4.	제18호 태풍 미탁	10. 10.	강원 삼척, 경북 울진·영덕
				10. 17.	강원 강릉(강동·옥계·사천)·동해(망상), 전남 해남·진도(의신), 경북 경주·성주
34	2020	7. 28.~8. 11.	7. 28.~8. 11. 호우	8. 7.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8. 13.	전북 남원,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 나주·함평·영광·장성, 경남 하동·합천
				8. 24.	광주 북·광산·남(효곡·대촌)·동(학운·지원2)· 서(유덕·서창), 대전 동(중앙), 경기 이천·연천· 가평·용인(원삼·백암)·포천(이동·영북)·양평(단월), 강원 화천·양구·인제·춘천(동·남·남산)· 홍천(홍천·화촌)·영월(영월·남), 충북 영동·단양· 진천(진천·백곡)·옥천(군서·군북)·괴산(청천), 충남 금산·예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순창·임실(성수·신덕)·고창(아산·공음·성송), 전남 광양(진월·다압)·순천(황전), 경북 봉화(봉성·소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령(낙서·부림)
35	2020	9. 1.~3., 9. 6.~7.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9. 15.	강원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9. 23.	부산 기장(기상·일광), 강원 강릉·인제·고성· 속초(대포)·평창(봉평·진부·대관령), 경북 포항·경주·청송(청송·주왕산·부남·파천)· 영양(영양·일월·수비), 경남 거제(동부·장평)· 양산(상북)·남해(상주·남), 제주(매월)
36	2021	7. 5.~8.	7. 5.~8. 호우	7. 22.	전남 장흥·강진·해남·진도(진도·군내·고군·지산)
37	2021	8. 23.~24.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9. 6.	경북 포항